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번 번호	12378
--------------	-------

발의연월일 : 2025. 8. 26.

발의자 : 한정애 · 송옥주 · 문진석

강준현 · 소병훈 · 어기구

김기표 · 이병진 · 이수진

조인철 · 서삼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감한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해당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
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허위조작정보

제5장에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2(손해배상 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

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의 기간 · 횟수
4.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5.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74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

3의2.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44조의11제2

항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제2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호의5.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
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①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u>허위조작정보</u> ”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② (생 략)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u><신 설></u>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허위조작정보</u>
3. ~ 9. (생 략) ② ~ ⑤ (생 략) <u><신 설></u>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1(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수 및 자격요건,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에 대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12(손해배상 책임)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를 입힌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4. 손해를 입힌 이용자의 재산상태

5.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74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신설>

3. (생략)

<신설>

제74조(별칙) ①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

3. (현행과 같음)

3의2.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기술적·관

	<p><u>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u> <u>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u> <u>하였거나 제44조의11제2항에</u> <u>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u> <u>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u> <u>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6조(과태료) ① (생 략)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4의4. (생 략)	1. ~ 4의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의5.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u> <u>하여 혀위조작정보 유통방지</u> <u>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